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 9. 6.)

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목 차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13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4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5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6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5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9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0

〔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8. 22.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 이성복,이흥희,최광열,
권재경,박희순)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완화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정비 등을 통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가정책 사안임.(소규모 및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3. 주요내용

가.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한시적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제3호)

○ 무허가 건축물 100분의 70 ⇒ 단, 무허가 축사인 경우 100분의 60 적용

※ 한시적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6호 규정
⇒ 「기축분뇨법」 부칙(12516호, '14.3.24 및 환경부령 제599호, '15.3.25)

나.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사항 항목 추가(안 제42조의3제1항제2호)

- 가설건축물 ⇒ 자진신고·천재지변·주민 공동소유 건축물 등 추가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15조의4 등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8. 25. ~ 8.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 합천군
 - (7) 도외 개정완료(19): 경산시,고양시,공주시,광명시,계룡시,강진군,
금산군, 나주시, 남원시, 담양군, 양구군, 이천시, 장수군, 완도군,
음성군, 장흥군, 진도군, 화성시, 횡성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행 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11.]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2.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3.24.]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

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15.12.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3.25.] [환경부령 제599호, 2015.3.25., 일부개정]

부 칙 <제599호, 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젓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젓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6호, 2017.6.2.,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본조신설 2012.12.18.]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정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을 정함.

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적용함.

다.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라. 포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 조치: 2018년 본예산 14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27. ~ 8. 16.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완료(8): 창원·밀양·사천·통영시, 함안·고성·산청·함양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내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예산 집행 시 조례안 제3조제3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거창군 보조금 지원에 관련하여 처리절차, 방법 등은 별도로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 관련조문: 제3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14	14	14	14	56
세출	국 비						
	군 비		14	14	14	14	56
	소계(a)		14	14	14	14	56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군 및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지원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및 군 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 14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 17-0110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7. 4. 12.
안건명	사천시 -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사천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천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에서는 사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제1호),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제2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함)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이하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사천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의 10)에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해 시·군·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2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사천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사천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

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사천시조례안에 운영비를 지원 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1. 26. 의견제시 17-0015 참조).

따라서,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
 -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
-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
- 다.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구성
 - ※ 경상남도의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예산 조치: '17년도 본예산 확보(2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7. 24. ~ 8.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2): 거제·김해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 조정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
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민간위원 7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1,96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 나. 국민안전처·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 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

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중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 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전문개정 2009.11.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11.17.>]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전문개정 2009.11.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11.17.>]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가.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법제처 질의회신 사례

안건번호	의견13-033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13.11.15.
안건명	인천광역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확인·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폐기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전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7. 경남서부보훈지청장
8.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9. 거창소방서장

10.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08.13>

⑤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0.08.13>

⑦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

나.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동원장교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000가 되며(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제5조삭제 <2010.08.13>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삭제>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과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재 기재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설시장의 명칭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별표 1)
-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 시장을 사용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점은 예외.
 -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사용제한 가능하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7조, 별표 2)
 - 사용료는 시장 개장일에 일액으로 징수
-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바. 법령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구 제2조~제6조, 제7조2항·제9조 · 제10조3항·제12조1항·제13조·제14조2항, 제15조~제19조,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9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7. 27. ~ 8. 1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창원·진주·사천시, 고성·하동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재 기재된 사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

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외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안건번호	의 건 11-0277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울산광역시 북구 -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지?

• 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구체적인 요율과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기본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사용료 요율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 및 제2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는 별도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두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는 공유재산 중 공설시장에 관련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관한 사용료와 요율에 대해서 일반(기본)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모두 공유재산인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양 조례 간의 충돌 문제가 발

생여지가 있으므로, 양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용료 규정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에 대해서는 ---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혹은 '---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등).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조례에 포함될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에 위임한다고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가 규정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설시장의 사용료 산정까지 조례에 정하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상충되는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 조례의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안건명: ○○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청기관: ○○군 기획조정실 (2015. 4. 6. 접수)

I. 주요 검토의견

1. 예체문화관의 사용·수익허가(조례안 제6조)

가.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법제처 검토의견
제20조(사용·수익허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조(사용·수익허가)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체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제6조(사용허가) ① 예체문화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하며 군수는 시설사업소장에게 허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⑨ 예체문화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군 관련 행사가 우선이며, 군 관련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수익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같다.

⑨ 예체문화관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허가한다.

1. 군 관련 행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먼저 신청한 자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

<p>사용·수익하게 한 경우</p> <p>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p> <p>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p> <p>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p>	<p>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p> <p>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체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p> <p>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p> <p><u>② 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u></p>	<p>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p> <p>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체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p> <p>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p> <p><u><삭 제></u></p>
---	---	--

나. 문제점

- 개정안 제6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라고 규정하여 예체문화관 사용허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예체문화관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예체문화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사용료 금액, 사용제한 등)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특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대판 97누1105)인바, 예체문화관 사용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과는 다른 의미임.
- 또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같은 법에 사용료의 산정방법(제22조), 사용료의 감면(제24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제25조)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법령과 달리 규정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조례에 따른 예체문화관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

144조에 따라 조례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수익허가”라는 표현 대신에 “사용허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24개 사무

~ 생략 ~

13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재 무 과	
14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제81조		
15	공유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16	불용품 처분 (읍면분, 정수물품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 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안 제17조)
 -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 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과제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18. ~ 8.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5): 창원·김해·사천시, 함안·함양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방화장실 규모를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운영신고자에 대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안 제12조제2항 신설)

상위법령	내용	구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공포20170508 시행20180101	(제8조)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을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임의조례 규제완화

□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법령위임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안 제17조)]

I. 문제점(유형: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 완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전문개정 2017.5.8.][시행일 : 2018.1.1.]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시행일 : 2018.1.1.] 제7조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17.5.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제목개정 2017.5.8.]

부칙 <제28018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

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

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3.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써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삭 제>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 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안 제4조)
- 라. 법령 불일치 및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구 제3조~제12조)
 -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금고설치, 자금의 전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 예비비, 결산 및 보고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6조·제9조·제50조, 「지방회계법」 제19조
- 나. 예산 조치: 국비 4,442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26. ~ 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낙동강수계 사업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입법 예고(1): 진주시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의 명확성 및 설치근거를 적시하는 등 필요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의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a)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세입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b)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392백만원
 - ※ 매년 5퍼센트 정도 사업비 감액
- 수질오염총량관리비: 52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2,865백만원
- 상수원관리사업비: 133백만원

작성자: 환 경 과 장 최 정 제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1.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11.8.4.]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회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례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10조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과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사유로 명시(또는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인상함.(별표 2, 별표 4)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세제곱미터당 단가 754원⇒792원
-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수도법」 제38조·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21. ~ 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5): 진주·밀양시, 창녕·고성·함양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부족분을 매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요금현실화가 2025년까지 정부 권장수준까지 미달되면 국고 페널티를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거창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내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상호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감면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610	<u>640</u>
	2~30	810	<u>850</u>
	31이상	1,060	<u>1,110</u>
일반용	1~30	760	<u>800</u>
	31~50	920	<u>970</u>
	51~100	1,070	<u>1,120</u>
	101~300	1,230	<u>1,290</u>
	301이상	1,380	<u>1,450</u>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710	<u>750</u>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액(원)	
	현 행	개 정 안
13	860	<u>900</u>
20	2,430	<u>2,550</u>
25	3,900	<u>4,100</u>
32	6,950	<u>7,300</u>
40	11,720	<u>12,310</u>
50	17,970	<u>18,870</u>
75	43,600	<u>45,780</u>
100	74,340	<u>78,060</u>
150	161,970	<u>170,070</u>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u>1년차</u>	<u>30퍼센트</u>
	<u>2년차</u>	<u>20퍼센트</u>
	<u>3년차</u>	<u>10퍼센트</u>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이후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 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도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5호, 2017.4.11., 일부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0.11.26.]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요금감면 관련)

안건번호	법 제 처 -13-0517	요청기관	경 상 남 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3. 12. 6
안건명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요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 • 회답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제1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제3호)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의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도법」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 대한 수도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물 요금 할인을 포함한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 「수도법」 제38조제3항에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을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38조제3항이 신설된 취지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요금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계획



거 창 군
(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계획

I. 필요성

-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 인상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관리책임 의무조항 반영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로 분뇨수집운반업자 규제 완화

II.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III. 개정내용

1. 상수도요금 인상

가. 관련조항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나.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 인상을 5% ⇒ 현실화율 45.38% (현행 43.32%)
 - m³당 현행 요금 754원 ⇒ 인상 요금 792원

-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을 5%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7조 및 제33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2 :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구분		현행	인상
업종구분	사용단계별(m³)	m³당 단가(원)	m³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610	640
	21 ~ 30	810	850
	31이상	1,060	1,110
일반용	1 ~ 30	760	800
	31 ~ 50	920	970
	51 ~ 100	1,070	1,120
	101 ~ 300	1,230	1,290
	301이상	1,380	1,450
산업용	1m³당	710	750

- 별표 4 :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구경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현재(원)	860	2,430	3,900	6,950	11,720	17,970	43,600	74,340	161,970
인상(원)	900	2,550	4,100	7,300	12,310	18,870	45,780	78,060	170,070

② 감면규정 신설과 「수도법」 상 근거가 미비한 조항 신설

가. 규정신설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검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정 신설(안 40조 제5항)

③ 하수도요금 인상

가. 관련조항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나.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인상을 5% ⇒ 현실화율 4.44%(현행 4.21%)

- m³당 현행 요금 171원 ⇒ 인상 요금 179원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1 :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현 행	인 상
업종구분	사용량구분(m ³)	m ³ 당 단가(원)	m ³ 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130	140
	21 ~ 30	180	190
	31 이상	240	250
일반용	1 ~ 30	160	170
	31 ~ 50	200	210
	51 ~ 100	240	250
	101 ~ 300	280	290
	301 이상	340	360
산업용	1m ³ 당	160	170

④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가. 관련조항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나. 주요내용

- 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 규제 완화
 -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분뇨는 24시간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 설명

IV. 세부추진계획

- 입법예고 : 2017. 07. 17 ~ 2017. 08. 07(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8월
- 조례안 제출 및 심의 의결 : 2017. 8월 ~ 9월
- 조례공포 : 2017년 9월
- 조례시행 : 2017.11월

-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한 요금 인상분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함.(안 별표 1)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세제곱미터당 요금 171원⇒179원
-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 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매월 청소실적 보고, 분뇨수거 요청 시 24시간 내 수거 삭제
 -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47조·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7. 21. ~ 8. 1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4): 진주·밀양시, 창녕·고성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거창군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는 내용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분뇨·수집 대행업자에게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행 계약사항에 명기하여 법률에 위배 될 소지를 명확하게 정리 하기 위한 것임.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내용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감면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130	<u>140</u>
	21~30	180	<u>190</u>
	31이상	240	<u>250</u>
일반용	1~30	160	<u>170</u>
	31~50	200	<u>210</u>
	51~100	240	<u>250</u>
	101~300	280	<u>290</u>
	301이상	340	<u>360</u>
산업용	1톤당	160	<u>170</u>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 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이후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타법개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과제정비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하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사업자는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 해소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3. 위탁개요

- 시설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위치: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시설현황

처리방법	시설용량	처리공정	비고
열분해가스화방식 (24시간)	30톤/일(1,250kg/hr)	1차연소실(열분해실)-2차연소실-폐열보일러-반건식세정실-여과집진시설-굴뚝	

- 위탁대상 사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 위탁업체 선정방법: 공개 제안공모 후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 소요예산: 1,547백만원 정도/년
-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
 - 2008.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완료(2013년까지 시공사 운영)
 - 2014. 1.~2017. 12.: 환경관련 업체 위탁대행 처리 중
 - 기존 통합관리대행에서 소각장부분 분리하여 관리
- 향후일정
 - 2017. 9.: 의회 동의 및 위탁운영 계획공고
 - 2017. 10.: 참여업체 제안평가
 - 2017. 11.: 가액입찰 및 업체선정(협약서 협약 등)
 - 2017. 12.: 인수인계 절차진행 및 착수검토
 - 2018. 1.: 관리 및 운영
- ※ 위탁대상 사무: 2018년부터 환경과(자원순환담당)로 이관관리 예정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면에서 유리함.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창의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3년간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대부료율)

-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2016.12.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014.10.0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014.10.01)
-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항신설 2014.10.01)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항이동 2014.10.0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14.10.01)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항신설2014.10.01. 2016.12.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6. 1. 20.][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 일부개정]